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09. 4. 1(수) ·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9. 4. 2(목)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08. 4. 10(금)

2. 개정이유

- 2008. 7. 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원활한 옥외광고물 관리 및 개선을 추진 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가.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안 제6조)
 - 광고물 표시 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시 광역시장과 협의 후 공보, 인터넷홈페이지,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으로 주민의견 최대한 수렴 반영토록 함
- 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선(안 제11조)
 - 가로등주를 이용 광고물 표시 못하도록 관련조항 삭제
- 다. 지정게시판 · 벽보판의 설치권자 지정 ⇒ 구청장(안 제16조)
- 라.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축소 조정(안 제18조)
 - 시간당 표출비율 25% ⇒ 20%
- 마.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안 제28조)
 -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범위 확대
- 바. 옥외 광고업자의 사후관리 강화(안 제31조)
 - 옥외 광고업자가 폐업신고 지연시 직권말소 규정 신설(안 제31조 제3항)
 - 영업소 내에 옥외광고업등록증 게시 및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광고

물 제작 및 설치대장 비치 규정 신설(안 제31조제4항)

사. 광고물 실명제 규정 신설(안 제33조의2)

- 광고물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

(안 제33조의2 제1항)

- 실명제 대상 광고물 및 예외규정 (안 제33조의2 제2항)

- 실명제 대상 광고물 :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 광고물
- 예외규정
 -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도시철도 차량광고
 -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공중에 띄우는 에드벌룬, 비행선, 선전탑, 아치광고물

- 실명제 표시 시행일 (안 제33조의2 제3항)

- 법 시행일(08. 12. 22)이후 신규로 허가·신고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의해 허가·신고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09. 6. 21이내)

- 실명제 표시를 권역·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 필요성이 있어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각 호 지역의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함 (안 제33조의2 제4항)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그 밖의 전지역

- 실명제 표시 방법 (안 제33조의2 제5항,제6항)

- 실명제 표시는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하고, 표시위치는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 단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토록 함
-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 원칙으로 하고 허가증, 신고필증 교부시 구에서 배부

아. 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안 제34조 제3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신고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자. 과태료 처분 세부기준 조정(안 제35조 제1항, 별표5)

-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를 위반한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표시, 부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평균 65%정도 상향조정하였으며, 불법 전단은 120%정도 상향조정
 - 입간판(도로설치) : 위반광고 면적별 10단계 구분하여 과태료 처분
 - 최저 연면적 0.5제곱미터 미만 : 8만원⇒13만원(62.5%인상)
 - 최고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 80만원⇒130만원(62.5%인상)
 - 현수막 : 위반광고 면적별 10단계 구분하여 과태료 처분
 - 최저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5만원⇒8만원(60%인상)
 - 최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 50만원⇒80만원(60%인상)
 - 벽 보 : 위반광고 장당 3단계로 구분하여 과태료 처분
 - 최저 (1~10장이하) 장당 10천원⇒17천원(70%인상)
 - 최고 (21장 이상) 장당 30천원⇒50천원(66%인상)
 - 전 단 : 위반광고 장당 3단계로 구분하여 과태료 처분
 - 최저 (1~10장이하) 장당 10천원⇒25천원(150%인상)
 - 최고 (21장 이상) 장당 25 천원⇒50천원(100%인상)
-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5단계로 구분하여 평균72%정도 상향조정
 - 최저 30일 미만 15만원⇒25만원(66%인상)
 - 최고 1년 이상 240만원⇒400만원(66%인상)
-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않았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규정 신설
 - 연 1회 위반 80만원, 연2회 위반 200만원, 연3회 위반 500만원
- 광고물 실명제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의 처분규정 신설
 - 연 1회 위반 80만원, 연2회 위반 200만원, 연3회 위반 500만원

차.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광고업자 등에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 37조)

4.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5. 참고자료

○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행정안전부, 2008. 11월)

6.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개정사항이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물의 실명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신설하는 사항과, 이를 위반한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울산 남구, 북구에서도 지난 3월 표준안대로 개정을 하였으며, 동구, 울주군은 개정 준비중에 있음.

나. 원활한 옥외광고물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이 법 시행일('08. 12. 22) 이전의 광고물은 '09. 6. 21까지 모두 실명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관 련 법 령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2 (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및 모범 옥외광고업자 등에 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2항의 종합 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광고물관 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 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③옥외광고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광고물등의 설치 종류·장소 및 시기, 그 밖 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⑥ 옥외광고업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 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2007.12.21>

제16조 (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0조 (과태료)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23, 2007.12.21>

1. 제3조의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
4. 제16조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2.5.30, 1997.2.6, 1999.2.26, 2000.7.1, 2002.12.26, 2005.6.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내용에 관하여는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7.2.6, 1999.2.26, 2005.6.2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8.7.9>

④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 해당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관할 지역 내 설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8.7.9>

제26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4, 1997.2.6, 2001.11.22, 2005.6.23, 2008.7.9>

1. 삭제 <2008.7.9>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3.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4.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5. 그밖의 공공시설물중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②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4, 2005.6.23, 2008.7.9>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7.9>

제31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개정 2001.11.22>) ① 광고물

등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6, 2000.6.23, 2001.11.22, 2005.6.23>

1. 전기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피복처리하여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때에는 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네온류를 사용하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4, 1999.2.26, 2001.11.22, 2005.6.23>

1. 삭제 <2008.7.9>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도 [제10조제1항](#) 각호의 지역중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일반주거지역중 폭이 15미터이상인 도로변을 제외한다.

2의2.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역과 인접된 지역에는 주거환경의 보호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인접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황색 또는 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5미터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삭제 <2001.11.22>

6.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 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2.6, 1999.2.26, 2001.11.22, 2005.6.23, 2008.7.9>

1. 삭제 <2008.7.9>

2. 제3항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전광류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제3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그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11.22, 2005.6.23>